

브리핑

2022년 11월 24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나. 방송광고정책과

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(2110-1270)

2022년 제59차 위원회(서면회의) 결과**[의결안건]****나.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****- 주식회사 엠비엔미디어랩 -**

○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(주)엠비엔 미디어랩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.

○ 심사 결과 (주)엠비엔미디어랩은 심사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.892점, 심사사항별 각 60점 이상으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,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(2022.12.1.~2027.11.30.)으로 함.

※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.변경허가.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」고시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,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받은 경우 재허가 적격 판정

○ 또한, 상반기 종편PP 미디어랩 3사에 대한 재허가시 부과한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(2022.3.23. 의결)을 부과하고,

- (주)엠비엔미디어랩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·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,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함.

붙임 : (주)엠비엔미디어랩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부. 끝.

(붙임)

(주)엠비엔미디어랩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

구분	내용	비고
재허가 조건	1. 신청법인과 최다액 출자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, 제작,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-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부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	2. 최다액 출자자로부터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방지하고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부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매년 반기별 이행 실적을 반기 종료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	3. 주주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재허가일부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매년 3월말까지 점검결과 등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	4. 중소기업 광고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부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	5. 신청법인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·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,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등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	
	6.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권고 사항	1. 공익광고 제작, 광고 관련 조사·연구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
	2. 전문인력 확보 시 경력직 채용뿐만 아니라, 신규채용과 수습 등을 통해서도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	종편4사 미디어랩 공통